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등의 공직 임명 제한 등 >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861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등의 공직 임명 제한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견태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8. 14.
3. 회 부 일 : 2024. 8.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정하고 있고,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제강점을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가 버젓이 자행되고,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이 독립운동을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임명되는 반헌법적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원에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며,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등의 공직 임명 제한 등
(안 제1조 등)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행법의 목적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¹⁾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한 자 등을 공직 등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며, 친일반민족행위 찬양·고무 등의 해당 여부가 불분명 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제1조(목적) ----- ----- ----- ----- -----<u>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u>-----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친일반민족행위가 찬양·고무·선전되지 못하도록 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
다.

1. ~ 5. (생략)

<신설>

의 구현하는 정책을 수립·시행하
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은 친일반민
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인, 단체, 기
관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기관의 공무원, 임원, 직원, 자문위
원(명칭을 불문하고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를 자
문, 지원, 조력, 감시 등 행위를 수
행하는 외부인)을 임명 또는 위촉
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면 아니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
관은 제2항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
한 사람, 법인, 단체, 기관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 친
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심
사를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
-----.

1. ~ 5. (현행과 같음)

6.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법
인, 단체, 기관인지 여부의 결정
에 관한 사항

6. (생략) <u>제5조</u> ~ <u>제35조</u> (생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u>제6조</u> ~ <u>제36조</u> (현행 제5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법은 러·일 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통령 소속으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규명에 관한 업무를 수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위원회는 4년 6개월간의 활동기간(활동기간: 2005.5.31. ~ 2009.11.30.)을 거쳐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동을 종료하였는데, 그 결과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자료로 남겼다는 점,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했다는 점, 이를 통해 민족정기를 세우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음.

그런데, 최근 친일반민족행위 동조 관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가 공공기관장에 임명되면서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현행법의 목적에 맞는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자 등을 공직 등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며, 친일반민족행위 찬양·고무·선정 등의 행위가 불분명할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으로,

친일반민족행위 찬양·고무 등의 행위에 대한 공직 임명 제재를 통해

2) 現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비판한 전임 관장…쫓겨진 광복절, 노컷뉴스, 2024. 8. 16.

https://www.nocutnews.co.kr/news/6196444?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40816064007

‘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국민 욕보여, 임명철회”, 뉴시스, 2024. 8. 12.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812_0002846987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의 심사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친일반민족행위동조자의 공직임용금지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동법에 규정하는 것이 입법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동법의 목적은 친일반민족행위(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인하고 사회정의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인 바, 개정안의 내용인 친일반민족행위 동조자의 공직임명금지 등은 진상규명이라는 동법의 입법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둘째,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공무담임권³⁾ 등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사람 등은 명칭, 종류·직위 등을 불문하고 그 어떠한 공직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 등에 임용될 수 없는 바, 명백하지 않은 친일반민족

3)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행위라도 위원회의 판단 등을 거쳐 친일반민족행위라고 결정되면 공직 임명이 제한되므로 이러한 것이 공무담임권의 취지⁴⁾에 비추어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셋째, 위원회는 현재 활동기간이 종료된 상태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한 경우가 불분명한 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바, 현재 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개정안을 입법화할 경우 위원회를 부활하여 상시로 운영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봄.⁵⁾

따라서,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입법목적 부합성 및 공무담임권 등의 과도한 침해 우려 등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4)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직무를 담당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무담임에 관한 자의적이지 않고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음을 의미하는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나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02. 8. 29. 2001헌마788)

5)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의 친일반민족행위 동조자에 대한 임명 금지 등이 일제강점 시기에 일본제국주의를 위하여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하여 후세의 교훈으로 삼고자 하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 및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 및 예산은 국가공무원법 등 해당 법령에 따른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활동기간이 종료된 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찬양·고무·선전하는 등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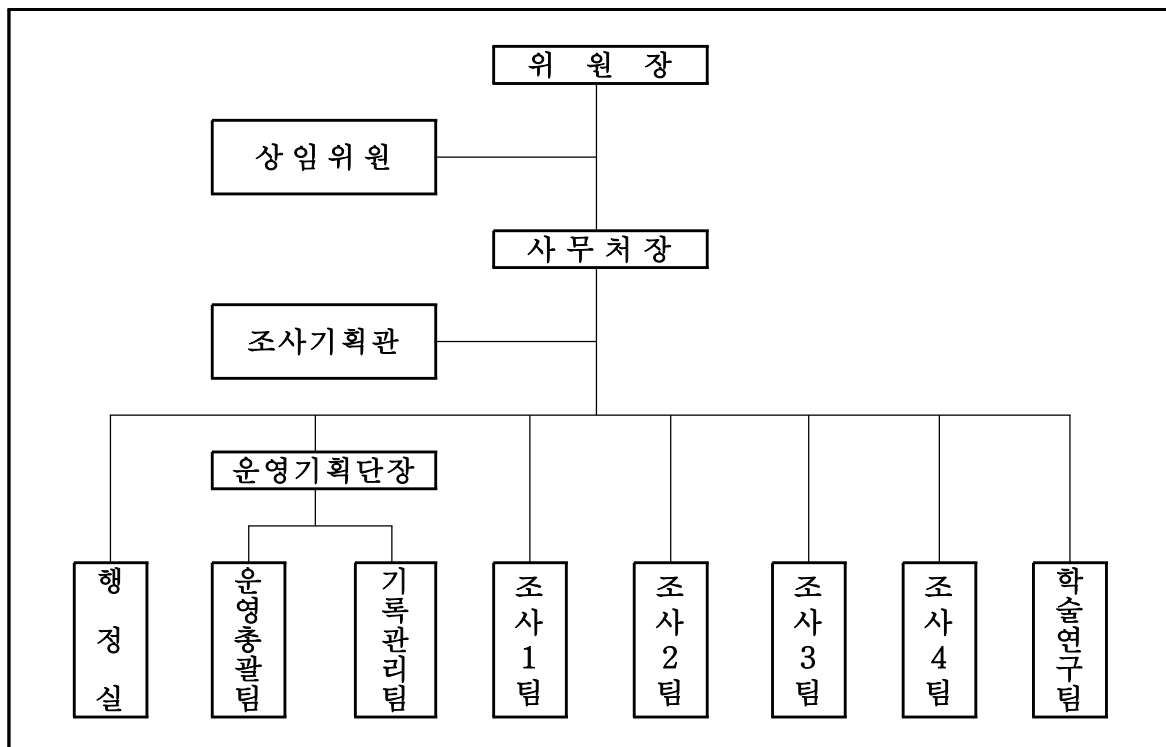
[참고자료]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현황

지명·선출	직위	인원	비고
대통령지명	위원장	1인	장관급
	상임위원	1인	차관급
	비상임위원	2인	
국회선출	비상임위원	4인	
대법원장	비상임위원	3인	
계		13인	

2.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일반현황

가. 조직도



※ 1처 1단 1관 1실 7팀

나. 인원현황

총원	정무직	자 체 인 력						파 견		
		소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전문 계약직	전문 인력	소계	국가직	지방직
113	2	89	4	24	3	11	47	22	22	

※ 전문인력(47) : 조사관 33, 비서·운전 4, 전산 1, 속기 1, 사무보조 8

※ 음영표시(55명)는 시행령상의 정원이고, 그 밖의 58명(전문계약직 11인, 전문인력 47인)은 예산상의 정원에만 포함됨.

3. 위원회 2009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08예산		2009예산안		증 감	
	금액(A)	%	금액(B)	%	(B-A)	%
계	8,969	100.0	8,436	100.0	△533	△5.9
인 건 비	4,782	53.3	4,984	59.1	202	4.2
주요사업비	4,187	46.7	3,452	40.9	△735	△17.5